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년 5월 19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5월 11일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0년 5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 5. 19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생활보장과장)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자활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기금의 존속기한 삭제

○ [제4조의2] 2020년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삭제

2)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규정 정비(안 제3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)

○ [안 제3조제8호, 안 제7조제6호, 안 제9조제4항, 안 제10조제4항] “수급자”를 “수급자 및 차상위자”로 변경

○ [안 제9조제2항] “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”를 “수급자가 5분의 1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” 로 변경

○ [안 제9조제2항] 후단에 “이 경우 자활기업이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한다”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

1)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, 제18조의2, 제18조의 3

2)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3)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6조, 제26조의 2

4)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1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:

1) 입법예고(2020. 4. 1. ~ 4. 21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 사전심사 결과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의 용도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, 기금운용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, 상위법에서 기금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조례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고, 기금의 지원대상 기업을 수급자 채용기업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으로 하였으며, 자활기업 구성원이 수급자 3분의 1이상인 기업에서 수급자가 5분의 1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
○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,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참고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8조(자활기업)

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상의 사업자로 한다.

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,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
2. 국유지·공유지 우선 임대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4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
5.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

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2(고용촉진)

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·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

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.
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

부담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제26조(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)

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한다.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채용 후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산정(算定)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장기관이 정한다.

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 고용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

의 고용비율, 지원금의 사용 내용을 해마다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, 지원 중단 및 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적립)

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적립금액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.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

제31조(지원 대상 자활기업)

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. 이 경우 자활기업이 제32조에 따라 지원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(算定)한다.

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전체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,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이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일 것
2. 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하였을 것
3. 법인(설립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었으나 설립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일 것